

#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 길 영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 길 영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9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,

현행 조례에서 ‘청년’의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가 2022년에 삭제된 바 청년의 정의를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라 규정하고, ‘청년 창업자’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신설 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